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대상이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 무로 하는 사람 등까지 확대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급대상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갑종 지급액을 정하고, 주재무관 중 국립외교원 등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 또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에서 일정 횟수 이상 심해 해난구조 작업을 한 사람 등에게 지급하는 갑종 위험근무수당 및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7. ~ 5. 19., 0. 0. ~ 0. 0.) 결과, 특
기할 사항 없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 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2. 제1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으로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주재무관의 근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1호의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가산금의 이중지급의 제한, 가산금 지급액 및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항공수당(갑) 제1호의 지급액(월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관: 1,201,900
대위: 960,500
중위·소위: 738,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검정등급을 받는 주재무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월액)
갑 종	1.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을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487,900 대위·중위·소위·준위: 463,300 원사·상사·중사: 458,2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해상특전요원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해상특전요원	영관 이상: 443,500 대위·중위·소위·준위: 356,400 원사·상사·중사: 352,400 하사: 245,700 병사: 240,20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및 제2호가목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나. 제2호나목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영관 이상: 403,200 대위·중위·소위·준위: 324,000 원사·상사·중사: 320,400 하사: 223,400 병사: 218,40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4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205,900 원사·상사·중사: 202,600 하사: 143,800 병사: 138,800
	5.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영관 이상: 225,500 대위·중위·소위·준위: 185,900
	6.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원사·상사·중사: 182,600 하사: 123,800 병사: 118,800
을 종	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영관 이상: 138,000 대위·중위·소위·준위: 113,600 원사·상사·중사: 106,000

		하사: 90,000 병사: 85,000
	2.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 (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 페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	영관 이상: 95,0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79,000 원사 · 상사 · 중사: 74,000 하사: 60,000 병사: 55,000
	3.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	영관 이상: 90,0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74,000 원사 · 상사 · 중사: 69,000 하사: 55,000 병사: 50,000
	4.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	영관 이상: 125,3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103,000 원사 · 상사 · 중사: 96,000 하사: 75,000 병사: 50,000
병 중	1.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4.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운전하는 사람 6.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영관 이상: 37,000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29,000 원사 · 상사 · 중사: 25,000 하사: 21,000 병사: 18,000

비고: 위 표 병종란의 제1호 중 “특수전류 분야”에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 분야가 포함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술정보수당)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p> <p>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 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p> <p>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p> <p>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p>	<p>제2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p>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합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기술정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 ①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 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 설>

③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규정 별표 11 제4호가목2)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에서 제2외국어(같은 표 제4호가목2)가)에 규정된 제1종 특수외국어 및 제2종 특수외국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검정등급(이하 “검정등급”이라 한다)을 받은 주재무관(「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2조에 따른 주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해당 주재무관이 제2항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립외교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

2. 제1호에 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으로서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주재무관의 근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제1호의 외국어능력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가산금의 이중지급의 제한, 가산금 지급액 및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관하여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13